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1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허성무·이정현·박선원
곽상언·김정호·이기현
소병훈·정혜경·윤준병
김종민·김남근·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60일”을 “4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④ ~ ⑥ (생략)</p> <p>제25조(준수사항) ①·② (생략)</p> <p>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40 일----- ----- ----- ----- -----.</p> <p>④ (현행과 같음)</p>
--	---